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5 선고 2020나337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5 선고 2020나337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21 선고 2016가단5854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변론 종결2020. 6. 17.

판결 선고2020. 7. 15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6가단58544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,040,000원 및 그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, 30,04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(제1심판결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도 함께 선고하였는데, 피고들은 반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).

2. 추가 판단

가. 피고 C의 주장 요지

피고 C는 2006. 5. 11.경부터 2015. 11. 6.경까지 이 사건 주택 E호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,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 E호에 위 기간 동안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.

나. 판단

1) 살피건대,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 C는 2003. 11. 13. 이 사건 주택 E호에

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2004. 8. 27. 이 사건 주택 K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, 2009. 7. 15. 충남 태안군 L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.

2) 그러나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

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C는 남편인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주택 E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점, ② 이 사건 주택 I호의 거주자 M은 "당시 이 사건 주택 E호에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었다."고 진술한 점, ③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16. 3. 30. "피고 C가 2004. 7.경부터 2015. 11.경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 E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, 남편인 피고 B이 위 침입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았고 고령인 점"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(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6년 형제2433호)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, 비록 2006. 5. 11.경부터 2015. 11. 6.경까지 피고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주택 E호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 C의 위 기간 동안의 실제 거주지는 이 사건 주택 E호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이종광

판사박상수

판사정은영